

인천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가단20979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인 담당변호사 이효진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20. 8. 3. 체결된 증여 계약을 11,495,2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95,2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7. 22.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19. 4. 4.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이율 연 17.4%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다.

다. 피고와 망인은 2020. 9. 25.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협의이혼 과정에서 망인은 2020. 8. 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의 지분을 증여하여 2020. 8.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라. 망인은 2021. 7. 9.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 중 자신의 지분인 1/2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1,495,2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망인은 혼인생활 중 알코올 중독 및 피고에 대한 학대로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다. 피고와 망인은 이혼에 합의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이전받는 대신 피고는 대출을 받아 망인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참조).

2)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빛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20. 8. 6. E조합으로부터 9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70,000,000원을 망인에게 지급한 점, 망인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7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날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② 피고는 망인과 이혼하면서 망인과 공동으로 가입한 7건의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망인으로 변경하여 주었고, 망인은 일부 보험계약을 해지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와 망인의 사이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동

